



김해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449호 2019. 11. 1(금)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제 1454호	김해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	25017
제 1455호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	25018
제 1456호	김해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5033
제 1457호	김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25036
제 1458호	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5037
제 1459호	김해시 드론연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25038
제 1460호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5040
제 1461호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25042
제 1462호	김해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5043
제 1463호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5044
제 1464호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25047

규 칙

제 665호	김해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25049
제 666호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5051

고 시

제2019-278호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 주차장) 경미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5054
제2019-279호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5055
제2019-280호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67호선의 1개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25056
제2019-281호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8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25059
제2019-282호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 중2-55, 중2-56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25060

공 고

제2019-3790호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25061
제2019-3814호	통행의 금지·제한,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25062

회 람										
--------	--	--	--	--	--	--	--	--	--	--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1월 1일

김해시 조례 제1454호

김해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해시보조례”를 “김해시보 조례”로 한다.

제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 또는 다양한 시정 소식지를 제작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편집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김해시보편집위원회”를 “김해시보자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홍보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김해시보 연간운영계획
2. 김해시보 장기발전방안
3. 그 밖에 김해시보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2명 이내의 취재기자를 둔다”를 “3명 이내의 취재기자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료”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심의를 거친다”를 “자문을 거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시민소통) 시장은 시보 만족도 설문조사 등의 독자참여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독자참여 이벤트에 당첨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감성매거진, 어린이 시보 등 다양한 시정 소식지의 발간을 위한 근거조항과 시보 독자참여 이벤트 후 경품 제공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다양한 시정 소식지의 발행 규정 신설(제2조)
- 시보편집위원회 명칭과 기능 변경(제4조, 제5조)
- 취재기자 증원(제7조)
- 경품 지급 규정 신설(제13조)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1월 1일

김해시 조례 제1455호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시장”을 “김해시장”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권한위임사항(출장소)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비고
일자리 정책과	1. 직업소개소의 등록·취소 및 지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직업안정법」 제18조	
		②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직업안정법」 제19조	
		③ 유·무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사업의 폐업신고	「직업안정법」 제35조	
		④ 유·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및 등록의 취소	「직업안정법」 제36조	
		⑤ 유·무료직업소개사업의 폐쇄 조치	「직업안정법」 제37조	
		⑥ 유·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보고 및 조사	「직업안정법」 제41조	
		⑦ 과태료의 부과·징수	「직업안정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지역경제과	1. 담배소매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담배소매인의 지정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②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③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④ 과태료 부과·징수	「담배사업법」 제28조, 제29조	
		⑤ 영업정지, 지정취소	「담배사업법」 제17조	
		⑥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	「담배사업법」 제22조의3	
	2. 방문판매업자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방문(전화권유)판매업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② 방문(전화권유)판매업변경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	
		③ 방문(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④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 등의 신고사항의 직권 말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⑤ 위반행위 조사 및 조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8조 및 제66조	
	3. 통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②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③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④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⑤ 위반행위의 조사 및 조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1조 및 제45조		
4. 액화석유가스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② 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③ 부적합시설 개선명령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④ 허가관청 등의 조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8조
		⑤ 법규위반자 행정처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5. 고압가스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
		②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③ 허가관청 등의 조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4조
		④ 법규위반자 행정처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6. 도시가스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정기 및 수시검사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②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
		③ 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④ 법령위반자 행정처분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 제51조, 제53조부터 제54조까지
여성아동과	1.보육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보육시설 설치 및 변경 인가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② 보육시설 폐지 및 휴지 등 신고	「영유아보육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③ 가정·민간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영유아보육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1조, 제42조
		④ 가정·민간보육시설 종사자 관리(임면,경력, 재직증명서발급, 신원조회, 교육 등)	「영유아보육법」 제19조
		⑤ 보육료 감면대상자 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법」 제34조
		⑥ 가정·민간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반환 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0조의2
		⑦ 행정처분(위반사실의 공표 포함)	「영유아보육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의3,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⑧청문	「영유아보육법」 제49조
		⑨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
		⑩과태료 부과	「영유아보육법」 제56조
		⑪ 부당이득금 보육료 징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노인장애인과	1.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건축허가(사용승인) 편의시설 업무협약의 (출장소에 위임된 건축허가에 한정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②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관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
	2.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경로당 설치신고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② 경로당 폐·휴지 신고	「노인복지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③ 경로당 변경신고	「노인복지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3.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개장허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② 사설묘지의 허가 및 설치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③ 화장시설등 설치(변경)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총무과	1. 인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7급 이하(6급 무보직자 포함) 공무원에 대한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토지 정보 과	1. 지적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토지의 조사·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② 지적공부의 비치·보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③ 지적공부의 복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④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⑤ 신규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⑥ 등록전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⑦ 분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⑧ 합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⑨ 지목변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⑩ 축척변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⑪ 등록사항의 정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⑫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⑬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⑭ 토지소유자의 정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	
		⑮ 등기축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⑯ 지적정리 등의 통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	
		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⑱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⑲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2. 부동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과태료 부과·징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
			②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③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④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⑤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징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2조			
⑥ 토지거래허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⑦ 외국인 취득토지 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⑧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10조			
⑨ 부동산중개업 관련업무	「공인중개사법」 제9조부터 제34조의2까지,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51조			
⑩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부동산거래신고조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②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①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지구 지정 신청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② 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③ 조정금의 산정 및 지급, 징수 또는 공탁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		

		④ 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법 제20조, 제21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⑤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⑥ 등기촉탁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⑦ 과태료의 부과·징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⑧ 기타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지적소관청 권한 일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등
수질 환경과	1. 야생동물·식물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야생동물 포획허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② 야생동물 포획허가 취소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③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④ 박제업자의 등록 등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⑤ 포상금 지급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⑥ 야생생물보호원 선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⑦ 명예 야생생물보호원 위촉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⑧ 야생생물보호원 등의 해임·해촉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⑨ 행정처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⑩ 청문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2. 악취방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축분뇨에 관한 사항)	①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개선권고 조치 (대기및폐수배출시설이있는사업장은제외)	「악취방지법」 제14조
		② 공공수역 관리	「악취방지법」 제16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	「악취방지법」 제30조
		④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3.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 및 변경신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② 토양오염검사 면제 승인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③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관리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④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⑤ 오염토양의 개선사업	「토양환경보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⑥ 토지이용 등의 제한	「토양환경보전법」 제21조 제3항
⑦ 행위제한		「토양환경보전법」 제24조	
⑧ 행정대집행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2	
⑨ 보고 및 검사 등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	
⑩ 과태료 부과·징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4.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② 가축분뇨 분리·저장시설 설치명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③ 배출시설 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④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개선 명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⑥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⑦ 과징금의 처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⑧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⑨ 과태료 부과·징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기후대기 과	1. 악취방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축분뇨에 관한 사항 제외)	①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개선권고 조치(대기및폐수배출시설이있는사업장은제외)	「악취방지법」 제14조
		② 공공수역 관리	「악취방지법」 제16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	「악취방지법」 제30조
	2.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운행차의 수시점검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② 운행차의 개선명령, 운행정지 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제70조의2
		③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수리 및 조치명령, 개선명령, 동 명령 위반자에 대한 사업중지, 시설사용 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대기배출시설이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④ 행정처분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⑤ 과태료 부과·징수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3. 소음·진동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②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③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④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
		⑤ 이동소음의 규제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⑥ 폭약사용 규제조치 요청	「소음·진동관리법」 제25조
		⑦ 운행차의 수시점검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⑧ 운행차의 개선명령 등	「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
⑨ 행정처분		「소음·진동관리법」 제49조	
⑩ 청문		「소음·진동관리법」 제51조	
⑪ 과태료 부과·징수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4.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개선명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② 보고 및 검사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	
청소행정 과	1. 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폐기물의 투기금지 및 행위 단속	「폐기물관리법」 제8조
		②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 명령	「폐기물관리법」 제8조
	2. 사업장폐기물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변경신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
		② 과태료 부과·징수 등	「폐기물관리법」 제68조
		③ 보고서 제출	「폐기물관리법」 제38조
	3. 폐기물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48조
		② 조치 사전 통보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2
	4. 보고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보고 및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검사	「폐기물관리법」 제39조
		5. 건설폐기물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
	②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③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④ 과태료 부과·징수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6.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및 「김해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	

			부터 제8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생활폐기물 배출자 관리에 관한 사항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 제8조, 제18조	
		③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폐기물관리법」 제38조	
		④ 과태료 부과·징수	「폐기물관리법」 제68조	
	7.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가연성 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김해시 전역에 한정함)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김해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	
도로과	1.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도로법」 제61조, 제117조	
		②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징수 및 관련 모든 업무	「도로법」 제61조,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③ 도로관련 시설물 설치·관리	「도로법」 제3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5조	
		④ 도로유지 및 하자관리 (농로, 마을안길, 자전거 도로 포함)	「도로법」 제3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	
		⑤ 도로굴착허가	「도로법」 제61조,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 제60조부터 제61조까지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⑥ 기존도로 보도신설 및 정비	「도로법」 제31조	
		⑦ 노상적치물 정비 및 노점상 단속	「도로법」 제61조, 제117조	
		⑧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허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⑨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도로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	
교통정책과	1. 교통행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불법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②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 처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도시계획과	1. 도시계획구역의 토지 관련 불법 행위 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불법형질변경 등 위법행위 조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 제1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②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계고 및 원상복구 조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 제1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③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42조	
	2. 형질변경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개발제한구역의 행위허가, 신고 및 준공 (1,650㎡ 미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3. 건축행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개발제한구역의 행위허가, 신고 및 사용 승인(3층이하, 연면적 2,000㎡ 미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건축과	1. 건축행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건축허가 등의 위임범위에 한정함) - 공사중지 - 시정명령 - 위반건축물고발, 사용금지 등 -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법」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②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조치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신규발생 및 동 규모 기존 건축물에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에 한정함) - 무허가 건축물의 예방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허가 건축물 철거 - 위반건축물고발, 사용금지 등 -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③ 건축물부설주차장 인·허가, 유지·관리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용도 사용행위 등 조사 및 위법 조치 - 본래의 기능유지관리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 및 용도변경 등 	「주차장법」 제19조의2, 제1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2. 건축물대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일반건축물의 표시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7조, 제18조
		② 집합건축물(전유부)의 전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③ 집합건축물(전유부)의 합병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④ 집합건축물(표제부, 전유부)의 표시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⑤ 일반건축물의 표시정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⑥ 일반건축물의 말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공동주택과	1. 주택행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및 사용 검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94조, 제99조, 제102조
		② 공동주택 불법건축물 단속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94조, 제99조, 제102조
		③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민원처리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93조, 제102조
		④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및 민원처리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제93조, 제102조
		⑤ 공동주택(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안전점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제34조, 제93조, 제102조
		⑥ 공동주택단지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제34조, 제93조, 제102조
		⑦ 공동주택관리 감사관련 업무(자체감사 및 경상남도 감사 주기적 실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02조
		⑧ 공동주택관리 관련 진정, 탄원, 소송, 건의, 질의 등 각종 민원 처리	「공동주택관리법」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9조, 제102조
허가과	1. 공장설립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설, 증설, 업종변경) 및 승인사항의 변경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5,000㎡ 미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② 공장설립 등의 협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③ 제조시설 설치승인 및 승인 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4조의4
		④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⑤ 공장의 등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⑥ 공장건축물의 등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⑦ 공장의 등록취소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⑧ 공장이전의 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⑨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⑩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⑪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승인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⑫ 지식산업센터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⑬ 청문	
		⑭ 과태료 부과·징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⑮ 공장설립 등의 승인 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⑯ 공장창업사업계획의 승인 등 - 부지면적 5,000㎡ 미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⑰ 공장창업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
	2. 건축행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건축물의 건축 등 관련 업무 - 건축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 건축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 - 건축물 대수선 - 공작물 축조신고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 건축물 착공 신고 - 건축물 착공연기 - 건축허가 및 신고 취소 -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 건축물 사용승인(용도변경 포함) - 임시 사용승인 신청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38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1조,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5조
	3. 개발행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개발행위허가(5,000㎡ 미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② 개발행위 준공검사(5,000㎡ 미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4. 산지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 사용허가, 신고 등에 대한 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정사무(5,000㎡ 미만)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5.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및 협의에 관한 권한	① 농업전용 용도변경 승인 및 협의(5,000㎡ 미만)	「농지법」 제40조
	6.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에 관한 권한	①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등 (5,000㎡ 미만)	「농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7. 개인하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시에서 처리하는 복합민원인 경우 협의는 시에서 한다)	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하수도법」 제34조
		②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하수도법」 제37조
	8.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대지안의 조경허가·준공검사 협의 (출장소에 위임된 건축허가에 한정함)	「건축법」 제42조
	9.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 및 착공전 정보통신 설계도서 검토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연면적 150㎡ 초과 건축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6층초과, 연면적 2,000㎡ 초과건축물 및 「건축법」 제9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제외) ② 6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 건축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착공전 정보통신설계도서 검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농축산과	1. 불법농지전용의 조사 및 원상회복 명령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불법농지전용 조사 및 원상회복	「농지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신고(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영업신고, 변경신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②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③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

		④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포함)에 관한 업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제28조, 제45조, 제47조
		⑤ 미신고 영업행위 등 부정 축산물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
	3. 가축(동물)병원 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동물병원 개설신고	「수의사법」 제17조
		② 동물병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의사법」 제17조
		③ 동물병원 휴·폐업신고	「수의사법」 제18조
		④ 동물 진료업의 정지	「수의사법」 제33조
		⑤ 과태료 부과·징수	「수의사법」 제41조
	4. 동물약국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동물약국 개설등록(신고)	「약사법」 제20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
		② 동물약국 개설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신고)	「약사법」 제20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
		③ 동물약국 폐업(휴업, 재개업) 신고	「약사법」 제22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의5
		④ 동물약국 등록증(신고증) 재교부(갱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5조
		⑤ 약사법 위반에 대한 조치(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	「약사법」 제76조, 제81조, 제98조
	5.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영업 등록	「동물보호법」 제33조
		② 변경신고 및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동물보호법」 제33조
		③ 영업승계 신고	「동물보호법」 제35조
		④ 등록취소	「동물보호법」 제38조
		⑤ 영업자에 대한 점검·출입·검사 등	「동물보호법」 제38조의2, 제39조
		⑥ 벌칙 적용 및 과태료 부과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
	6.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 임대업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개설신고	「의료기기법」 제17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3조
		②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료기기법」 제17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
		③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폐업(휴업, 재개업) 신고	「의료기기법」 제17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의5
		④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재교부(갱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5조
		⑤ 의료기기법 위반에 대한 조치(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	「의료기기법」 제36조, 제38조, 제51조부터 제54조의2까지, 제56조
공원 녹지과	1.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도시공원의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②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③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④ 원상회복조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⑤ 공원입장료 및 점용료의 징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⑥ 공원 감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6조
	2.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3조
	3. 녹지 등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녹지의 점용허가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②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③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4. 가로수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가로수 이식 승인 ② 가로수 하자보증금 환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산림과	1. 등산로 정비 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등산로 정비사업, 등산로 유지·보수 및 관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2. 산림경영계획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산림경영계획 인가 ② 산림경영계획 실행신고 ③ 산림경영계획 사후관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3. 임산물 굴취 허가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4. 산지정화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산지정화 및 지도 ② 산지정화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산림의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5. 산림내 불법행위 지도 단속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불법행위 적발보고, 사건처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임산물에 관한 위반행위) ② 불법지 행정처리 및 지도단속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8조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8조
	6. 공유임야(재산) 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유임야매각, 임야대부 및 분수림 설정허가, 공유림의 임산물 매각, 공유재산 관리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7. 산지전용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산지전용협의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위생과	1. 「식품위생법」의 영업 허가 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식품접객업 허가(유흥주점, 단란주점) ②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소재지 변경)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제37조
	2. 「식품위생법」의 영업 허가 및 신고업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영업신고(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②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영업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식품 중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새로운 식품의 유형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식품운반업의 냉장·냉동차량의 증감,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증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3. 「식품위생법」의 등록(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영업등록(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② 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소재지,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과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제37조
	4. 「식품위생법」의 폐업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폐업(허가·신고·등록 업종)신고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37조
	5. 품목제조의 보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품목제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의 보고, 변경보고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37조
	6. 영업승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영업자(허가·신고·등록업종)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39조
	7. 식품위생교육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영업자(허가·신고·등록업종)의 식품위생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41조
	8. 품질관리 및 보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영업자(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의 생산실적 보고에 관한사항	「식품위생법」 제42조
	9. 위해식품 등의 회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영업자(식품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의 위해식품 회수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45조
	10. 식품 등의 이물 발견 보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영업자(식품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의 이물발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46조
	11. 위생등급에 관한 다	① 영업소(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식품위생법」 제47조

	음의 권한	집단급식소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사항	
	12. 조리사 면허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조리사 면허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 ② 조리사 면허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53조 「식품위생법」 제80조
	13. 출입·검사·수거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출입·검사·수거 업무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14.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영업(허가·신고·등록업종)의 시정명령, 폐기처분, 위해식품의 공표, 시설개수명령, 허가취소, 품목제조정지, 폐쇄조치,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제재 청문, 과징금·과태료처분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 제79조,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제101조
	15. 식중독 조사보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식중독 원인의 조사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86조
	16. 집단급식소 영업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집단급식소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 ② 집단급식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88조 「식품위생법」 제88조
	17.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식품위생법」 위반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90조
	1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로 정한 영업신고 업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건강기능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변경·폐업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19. 출입·검사·수거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출입·검사·수거 업무에 관한 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
	20. 시정명령·허가취소 등 행정제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영업의 시정명령, 폐기처분, 시설개수명령, 영업소의 폐쇄, 폐쇄조치 등, 행정제재 청문, 과징금·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47조
	21.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
	2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②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표지판 등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23.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24.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금지 등에 관한 사항 ②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에 관한 사항 ③ 광고의 제한·금지 등에 관한 사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
	25.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26.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② 과태료처분에 관한 사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7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27. 「공중위생관리법」의 영업신고 업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변경·폐업 신고에 관한 사항 ② 영업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③ 영업소의 보고 및 출입·검사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28.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영업소 폐쇄 등 행정제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항 ②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에 관한 사항 ③ 행정처분(과징금처분) 및 청문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제12조
	29.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②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
		③ 공중위생감시원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
		④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30. 과태료 부과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31. 무신고 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무신고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32.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33. 이용사 및 미용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등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②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34. 「위생용품 관리법」 관련 업소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무신고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위생용품 관리법」 제32조
		② 위생물수건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 등 신고,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③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에 관한 사항	「위생용품 관리법」 제4조
		④ 영업의 승계에 관한 사항	「위생용품 관리법」 제6조
		⑤ 출입·검사에 관한 사항	「위생용품 관리법」 제14조
		⑥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항	「위생용품 관리법」 제15조
		⑦ 폐기처분 등에 관한 사항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
	35. 행정처분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위생용품 관리법」 제17조
		② 청문에 관한 사항	「위생용품 관리법」 제21조
		③ 폐쇄조치 등에 관한 사항	「위생용품 관리법」 제19조
		④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항	「위생용품 관리법」 제22조
	36. 위생교육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
	37. 과태료 부과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과태료에 관한 사항	「위생용품 관리법」 제34조
	38. 노래연습장 교육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39. 노래연습장 등록 등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노래연습장 등록 및 변경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1조
		② 노래연습장 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③ 영업의 승계에 관한 사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④ 폐업 및 직권말소에 관한 사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40.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 등 행정처분 및 청문에 관한 사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0조
		②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③ 영업소 폐쇄 조치에 관한 사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④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문화예술과	1. 출판사 및 인쇄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출판사 영업 및 변경신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② 출판사 폐업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1조
		③ 인쇄소 영업 및 변경신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④ 인쇄소 폐업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3조
	2. 공연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연장 등록 및 변경	「공연법」 제9조
	3. 영화상영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영화상영관의 등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② 영화상영 신고 및 변경 신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③ 영화상영관에 대한 영업정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④ 영화상영관의 등록취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⑤ 과태료 부과·징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
	4. 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②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③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④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⑤ 허가증·등록증·신고증교부(재교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⑥ 허가취소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⑦ 과징금 부과·징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⑧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1조
		⑨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관광과	1. 여행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여행업 등록, 변경등록	「관광진흥법」 제4조
		② 여행업에 관한 보고, 검사	「관광진흥법」 제78조
		③ 여행업 등록증의 발급(교부, 재발급)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
		④ 여행업 합병, 양도, 양수 휴·폐업 신고	「관광진흥법」 제8조
		⑤ 여행업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관광진흥법」 제35조
		⑥ 여행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관광진흥법」 제37조
		⑦ 여행업체에 대한 청문 실시	「관광진흥법」 제77조
		⑧ 여행업 과태료 부과·징수	「관광진흥법」 제86조
가야사 복원과	1. 문화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문화재 현황관리, 문화재 훼손 및 도굴방지, 주변 불법 현상 변경 단속	「문화재보호법」 제34조 및 제35조
수도과	1. 간이상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수도법」 제47조
		②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수질 관리	「수도법」 제29조, 제55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③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유지·보수	「김해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9조
		④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김해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10조
		⑤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폐지	「김해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11조
	2. 저수조설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위생상의 조치여부 지도·감독	「수도법」 제33조
		② 저수조 설치 협의	「수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③ 저수조 청소 및 위생 점검	「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3. 약수터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약수터 수질관리	「먹는물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하수과	1. 배수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배수설비의 설치·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 시행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② 배수설비의 시공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③ 배수설비 준공검사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
		④ 배수설비의 관리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⑤ 사용개시 등의 신고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7조
		⑥ 일시사용신고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

		⑦ 하수관로 준설 등	레」 제8조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2. 오수·분뇨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②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③ 행정처분 ④ 과태료 부과·징수	「하수도법」 제37조 「하수도법」 제40조 「하수도법」 제71조, 제72조 「하수도법」 제80조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중화장실의 관리 ②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 등 ③ 과태료 부과·징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7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체육지원과	1. 신고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신고 및 변경신고 ②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 ③ 청문 ④ 벌칙 및 양벌규정에 의한 조치 ⑤ 과태료 처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9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별표 2] 권한위임사항(읍면동)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비고
노인 장애인과	1. 장애인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장애인등록 및 취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7조의2	
		② 장애인등록증의 교부(재교부 포함)와 반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8조	
		③ 장애정도 조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④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⑤ 장애상태의 확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⑥ 장애인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⑦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총무과	2. 매장 및 묘지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매장·화장·개장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3.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노인복지법」 제36조, 제47조	
	1. 인사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보직부여 및 읍·면·동내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안전도시과	2. 주민등록에 관한 업무 중 다음을 제외한 권한	①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②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이용 승인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1. 민방위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민방위 의무위반자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도시 디자인과	2.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사실확인서발급에 관한 권한	①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1.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신고 수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② 옥외광고물 등의 신고사항 변경 및 기간 연장신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③ 옥외광고물 등 표시 및 설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④ 신고대상 옥외광고물 등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농축산과	1.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에 한정함)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농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②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법」 제49조
		③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및 관리	「농지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
		④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교부	「농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⑤ 자경증명의 발급	「농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산림과	1. 산림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입산허가	「산림보호법」 제15조, 「산림보호법시행규칙」 제14조
위생과	1. 한림체력증진센터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한림면에 한정함)	① 한림체력증진센터 위탁, 관리, 운영 등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부터 제17조까지

◇ 제안이유

- 출장소 및 읍·면·동 위임대상사무를 전수 조사해 상위 법령 준수 여부 및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장소장 권한위임 사무 정비(제2조, 별표 1)
- 읍·면·동장 권한위임 사무 정비(제2조, 별표 2)
-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소관부서 및 위임사무 재정비함(제2조, 별표 1, 별표 2)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1월 1일

김해시 조례 제1456호

김해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 읍·면·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업무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각종 교육 활동 및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는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권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협의 권한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읍·면·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읍·면·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 권한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호별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위원 수의 10분의 6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해당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이장·통장 연합회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4 이하로 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여부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 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읍·면·동장이 정한다.

제 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 11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 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13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 14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면·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읍·면·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동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 15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지역 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 16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자치회장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 18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추천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3조(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읍·면·동 소속 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5조(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6조(보험) 시장은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세칙)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시범 설치·운영하는 읍·면·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 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 조례의 시범실시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안이유

-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주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제1조)
 -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 기능(제5조)
 - 협의업무, 수탁업무 및 주민자치업무를 수행
- 주민자치회 정수(제6조)
 -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의 선정(제9조)
 -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추천으로 선정
 -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 후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
- 주민총회(제14조)
 -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주민자치회 의결 안건을 처리함
 -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읍·면·동 행정사무 의견제시 및 자치계획안 등 결정
- 운영지원 등(제23조)
 - 주민자치회가 공공사업 또는 협의업무·수탁업무·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1월 1일

김해시 조례 제1457호

김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및 점검(제3조)
-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제4조)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육성론

2019년 11월 1일

김해시 조례 제1458호

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4호 후단 중 “또한,”을 “이 경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시장의 인정 취소) ① 김해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김해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김해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김해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사람”을 “자”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김해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김해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25조”를 “제24조”로 한다.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로 하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로 하며, 제26조 및 제3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의 철회 요청서(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등 기재) 등을 김해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로 한정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제9조)

○ 상인회의 등록 취소(제20조의2)

○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제24조의2)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제26조)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제31조)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1월 1일

김해시 조례 제1459호

김해시 드론연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드론연습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위치 등) 드론연습장의 위치와 이용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 :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365-1번지
2. 이용면적 : 9,900㎡

제3조(운영시간) ① 드론연습장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3. 드론연습장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드론연습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료) 시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교육 재료비 등은 실비의 범위에서 이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이용규격) 드론연습장에서는 자체 중량 12kg 이하 드론만 비행할 수 있다. 다만, 드론 조종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산업테스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안전관리담당자는 관리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다만, 드론연습장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 책임을 수탁자가 진다.

제7조(운영계획수립)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연습장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드론연습장의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8조(연습장 운영·관리) ① 드론연습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드론연습장 유지·보수 등 관리
2. 안전관리 대책수립
3. 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 진행
4. 시설 및 장비·비품 등 청결 관리
5. 이용객 안전수칙 안내 등 안전사고 예방
6. 전문 관리자 배치 등 인력 운영·관리
7. 시설물 사용제한(무단이용자에 대한 퇴장 조치 등)
8. 운영·관리에 필요한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정리

② 안전관리담당자(또는 수탁자)는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수시로 점검하여 청결상태 유지 등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 ① 시장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② 기업체 또는 단체 이용자는 자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모든 이용자는 현장에 구비된 안전서약서를 작성 후 이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가입) 시장은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1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드론연습장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성을 갖춘 제3자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운영관리상황, 사업집행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운영·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이용대상) ① 드론연습장은 개인, 단체 또는 기업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산업과 레저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김해시민과 지역 내 기업에 이용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드론연습장은 취미·여가용 또는 연구(산업테스트)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조종시연, 사설교육 및 상품진열 등 상업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13조(이용방법) ① 드론연습장 시설이용 또는 체험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김해시 인터넷 홈페이지(김해시 공공시설예약 서비스)에서 사전 예약신청 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약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교육, 시설이용 기업 또는 단체 : 3일 전
2. 시설이용 개인 : 1일 전

② 시설의 이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용은 최대 2시간까지 예약 가능하며, 이용 당일 안전관리자의 지도에 따라 추가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이용 당일 드론연습장에 비치된 이용대장에 드론 조종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기체모델명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별표 1의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숙지한 후 이용해야 한다.
3. 비행구역은 펜스를 경계로 하며, 이용자는 드론이 비행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조종해야 한다.
4. 체험교육 진행 시에는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이용자의 권리) 이용자는 드론연습장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대하여 운영자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별표 1의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드론연습장 이용자가 별표 1의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는 이용제한 또는 퇴장 조치할 수 있다.

제 16조(이용자의 책임) ① 이용자는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이용자는 별표 1의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 위반 또는 이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 17조(사고발생 시 조치) 안전관리자는 드론연습장 내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 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

1. 드론 조종자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 나. 인구가 밀집된 지역과 그 밖에 사람이 운집한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드론을 조종하는 행위
 - 다.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드론을 비행하게 하는 행위. 다만, 150m미만의 고도에서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비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 라.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 등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 또는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마. 드론에 연료를 공급하거나 배출할 때, 드론을 이착륙할 때 흡연하는 행위
 - 바. 항공기, 경량항공기 등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드론을 비행하는 행위
 - 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 밖에서 드론을 비행하게 하는 행위. 다만,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비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 아. 다른 비행체에 근접하여 드론을 비행하거나 편대비행을 하는 행위
 - 자.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촬영하는 행위
 - 차.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드론을 비행하게 하는 행위
2. 드론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 가. 조종자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행할 것
 - 나. 조종자는 비행 중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비행장치에 의해 인명과 재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할 것
 - 다. 비행장소가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는지 비행 중의 드론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비행 전에 확인할 것
 - 라. 조종자는 이륙 시 육안을 통해 주변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보조요원을 배치하고 이착륙 시 활주로에 접근하는 내·외부인의 부주의한 접근을 통제하여 비행할 것
 - 마. 비행은 반드시 규정 및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인가되지 않는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종자는 곡예비행 및 수평비행고도에서 옆 기울기 60도 또는 피치 30도를 초과하는 조작을 하지 아니할 것
 - 바. 조종자는 전신주 주위 및 전선 아래에 저고도 미식별장애물이 존재한다는 의식 하에 회피기동을 하여야 하며 사고 예방을 위해 전신주 사이를 통과하는 것은 자제할 것
 - 사. 조종자는 비행 중 원격 연료량 및 배터리 지시계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연료 및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여 계획된 비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것
 - 아. 드론에 탑재되는 짐벌 등을 안전하게 고정하여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행성능을 초과하는 무게의 탑재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자. 조종자는 비행 중 원격제어장치, 원격계기 등의 이상이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가장 가까운 이착륙 장소에 안전하게 착륙할 것
 - 차. 조종자는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하며 다른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발견 즉시 충돌을 회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카. 조종자는 가능한 운영자 또는 보조자를 배치하여 다른 비행체 발견과 회피를 위해 외부 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 타. 군 작전 중인 헬기, 전투기가 불시에 저고도·고속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군 방공 비상사태 인지 시 즉시 비행을 중지하고 착륙을 할 것
 - 파. 이륙 장소 및 착륙 장소에는 라바콘을 설치하여 동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드론의 운영사항에 대해 알릴 것

◆ 제안이유

- 김해시 드론연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드론연습장 시설 위치 등과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제2조, 제3조)
- 시설 이용료와 이용규격에 관한 사항(제4조, 제5조)
- 드론연습장 운영·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제8조, 제9조)
- 드론연습장 운영·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제11조)
- 드론연습장의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제12조, 제13조)
-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 제15조)
- 이용자의 안전책임과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등에 관해 규정함(제16조, 제17조)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1월 1일

김해시 조례 제1460호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및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조치”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 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 나.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및 환경분야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 ① 저공해조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서 김해시에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의 명령)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년(제3항제1호의 경우 차기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의무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제3항제1호의 경우 차기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그 자동차를 정비한 후에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관련 법령 및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소유자	성명(상호)	(남,여)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팩 스 :)		
자동차	자동차 등록번호	부착·개조 기간	년 월 일까지	
	차 종	1. 차량모델() 2 연식() 3 엔진 형식()		
	용 도	<input type="checkbox"/> 출·퇴근 <input type="checkbox"/> 영업 <input type="checkbox"/> 그 외 일평균 이용시간 ()시간		
신 청 내 용	연장사유	<input type="checkbox"/> 매연농도 10% 이하 <input type="checkbox"/> 그 외 ()		
	연장기간	년 월 일까지		
그 외	예상장치	<input type="checkbox"/> 배출가스저감장치 <input type="checkbox"/> 저공해엔진		
<p>「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p> <p>김해시장 귀하</p>				
<p>※ 구비서류 1. 정밀검사결과표 2.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장치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부착계약서류)</p>				

◇ 제안이유

○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부합시키고, 그 밖에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관련 법 조항 변경(제1조)

○ “저공해조치”의 정의 변경(제2조)

○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범위 변경(제3조)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1월 1일

김해시 조례 제1461호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부담금 및 과태료”를 “부담금”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을 “(부담금의 부과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의 제목 “(부담금 납입절차 등)”을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별지 6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명기하여야”를 “명확하게 적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금”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상복구 공사비를”을 “원상복구 공사비의 80퍼센트 이내에서”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하수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며, 지하수 원상복구 공사비 지원 비율을 균등하게 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부담금 부과대상 및 부과·징수 규정 정비(제13조, 제14조)
- 지하수 원상복구 공사비 지원 비율을 균등하게 변경(제17조)
- 과태료 관련 규정 삭제(제18조 ~ 제24조)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1월 1일

김해시 조례 제1462호

김해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물업종의 구분이 종전 일반·개별·용달화물 운송사업에서 일반·개인화물 운송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추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종구분 변경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 기준 변경(제2조)
 -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1월 1일

김해시 조례 제1463호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소유자 등이 없이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맹견”이란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다.
4.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공급,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을 보장함으로써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여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동물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기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위탁보호센터”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업무를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탁보호센터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8. “긴급보호동물”이란 소유자 등의 사망, 구급 등의 사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말한다.
9. “들개”란 산간 및 도시를 배회하며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위협을 가하는 야생화된 개를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와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과 소유자 등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반려동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과 소유자 등은 법 제8조의 동물학대 및 동물유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동물복지시책, 동물의 학대방지·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시장이 지정한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인 식표를 장착하고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맹견의 출입금지) 시장은 맹견의 소유자 등에게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보호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호센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동물병원
2.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
3.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

제8조(동물의 구조·보호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발 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시설 등에서 유기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스스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의 개체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들개에 대하여 시민안전과 동물복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유기동물 보호의 공고 등)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 자 등이 보호사실을 알 수 있도록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 식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 또는 위탁보호센터장은 위탁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이 법 제7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 물 보호 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구호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센터 또는 위탁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센터 또는 위탁보호센터에서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탁보호센터장은 매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호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11조(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 ① 시장은 구조된 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유자가 반 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 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4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의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동물원, 동물 애호자 또는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동물 애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2.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3. 기증 또는 분양을 희망하는 일반인 중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사람

⑤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른다.

제 12조(위탁보호센터의 취소) 시장은 위탁보호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기동물 보호·관리의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임무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동물보호 관련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보호센터로서의 기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13조(피학대 동물 보호 및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고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긴급보호동물에 대해서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보호센터 또는 위탁보호센터에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소유자 등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소유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소유자 등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한다.

④ 소유자 등이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⑤ 시장은 동물의 소유자 등이 법 제20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의 사망, 구금,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긴급보호동물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 14조(동물 보호·복지업무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분양 및 동물 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정된 위탁보호센터, 동물등록대행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및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 산정은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13조의 기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분양,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홍보, 위원회 활동 및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산업육성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15조(수수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2. 유기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3.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4.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로 동물을 재등록하는 경우 : 50%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50%
6.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30%
7. 세 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 20% (다만, 세 번째 동물부터 적용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동물보호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유기동물 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및 동물 복지 지원 등을 포함한 지속적이고 폭넓은 동물보호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3조)
-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4조)
-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6조)
- 동물의 구조·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8조)
- 피학대 동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3조)
- 동물 보호·복지업무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4조)
- 동물 등록 수수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5조)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1월 1일

김해시 조례 제1464호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김해시수도급수공사대행업지정규칙」”을 “「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제31조제2항 및 제4항”을 “제3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급자 요금감면”을 “수급자 또는 다자녀 요금감면”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호 및 제6호의 신고사항에 대한 변동이 있을 때

제22조제2항 중 “10분 이상”을 “10분”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미리 예고”를 “예고”로 한다.

제3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단일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 가구분할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거주하고, 취사를 달리하는 사실상 독립된 세대여야 하며, 가구당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다만, 전입과 세대구성이 어려운 기숙사,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경우에는 가구당이 아닌 실제 거주하는 방수에 따라 적용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면대상, 감면회수”를 “대상, 횟수”로 한다.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그밖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5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1조 중 “수수료, 과태료,”를 “수수료,”로 한다.

제53조제2호 중 “수급자 상수도요금”을 “수급자 또는 다자녀 상수도요금”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인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에 따른 체계개편 요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요금 인상은 각각 해당 연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수도사용료 요율표 (제28조제1항 관련)

업종별 요율표

구경별 기본요금

		구 분					
업종별	단계별	사용량(m ³)	요금 (원)				
			개정전	체계개편	2020년 7월부터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부터
가정용	1	1 ~ 20	550	580	660	750	850
	2	21 ~ 30	790				
	3	31 이 상	1,210				
일반용	1	1 ~ 50	1,070	1,070	1,210	1,360	1,520
	2	51 ~ 100	1,510	1,510	1,690	1,910	2,160
	3	101 이 상	1,840	1,840	2,060	2,310	2,610
대중탕용	1	1 ~ 200	860	860	970	1,100	1,240
	2	201 ~ 500	1,290	1,330	1,500	1,690	1,900
	3	501 ~ 1000	1,350				
	4	1001 이 상	1,480	1,480	1,670	1,880	2,120

구경별	금액 (원)
13m/m	1,100
20m/m	2,400
25m/m	3,560
32m/m	5,580
40m/m	9,900
50m/m	15,630
75m/m	37,470
100m/m	61,850
150m/m	130,800
200m/m	191,340
250m/m	268,580
300m/m	315,580
400m/m	484,660

※ 체계개편 요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 제안이유

- 총괄원가 상승으로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 요금인상 등 현실화 요금을 반영하고, 인구정책에 따른 다자녀 세대 수도요금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수도요금 체계 개선 및 요금 인상(별표 2)
 -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 및 대중탕용 누진제 완화, 3년간 13%씩 수도요금 인상
- 다자녀 세대 수도요금 감면 근거 신설(제21조)
- 가정용 수도사용료 누진제 폐지에 따른 수도가구분할 신고대상 및 적용 방법 등 정비(제21조, 제31조)
- 건축물내 세대별 계량기 설치시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 관리주체 정비(제12조제3항)
-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제46조, 제50조, 제51조)

제526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김해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1월 1일

김해시 규칙 제665호

김해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김해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김해시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시장”을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권한재위임사항(출장소)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비고
수질환경과	1. 수질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자에 대한 방제 조치 이행 명령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	
		② 수질오염사고 방제 조치의 대집행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4항	
		③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	「물환경보전법」 제19조	
기후대기과	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연료의 공급·판매·사용자에 대한 조치명령 (대기및폐수배출시설이있는사업장은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② 연료의 제조·사용 등의 규제 (대기및폐수배출시설이있는사업장은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도로과	1. 지방도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지방도의 수선 및 유지업무 가. 경미한 유지관리 행위 1) 노면, 노건, 측구배수로 등의 정비 및 준설 2) 도로 비탈면 정비 및 낙석 제거 3) 도로상 시거 장애물 제거 나. 가로등, 지하차도(배수기계 등), 터널, 시가지 보도 등의 유지 관리 다. 정기 및 수시 도로순찰 라. 재해대책 1) 재해 위험지구 조사 2) 재해 응급복구 3) 재해조사 4) 재해시 우회도로 지정 및 입간판 설치 5) 도로침수 방지 및 겨울철 제설작업 마. 중요시설물의 방호	「도로법」 제31조 및 「경상남도지방도유지·관리규정」	
		② 지방도상 타 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도로법」 제33조	
		③ 지방도상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도로법」 제35조	
		④ 지방도의 도로점용 허가	「도로법」 제61조제1항	
		⑤ 지방도 도로점용 공사의 통지	「도로법」 제65조제2항	
		⑥ 지방도의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도로법」 제66조	
		⑦ 지방도의 도로점용료 징수제한	「도로법」 제68조	
		⑧ 지방도의 도로점용자에 대한 원상회복의 확인 및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경우 등의 승인	「도로법」 제73조	
		⑨ 지방도의 도로점용과 관련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도로법」 제96조	
		⑩ 지방도의 도로점용 허가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도로법」 제97조	
		⑪ 지방도의 도로점용료 미납부자에 대한 점용료 강제징수 및 그 밖의 부담금의 강제징수	「도로법」 제69조	
		⑫ 지방도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	「도로법」 제72조	
		⑬ 지방도의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한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제73조제3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도로법」 제117조	

		⑭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⑮ 비상재해시 지방도별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	「도로법」 제83조
		⑯ 지방도의 접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다.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도로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⑰ 지방도의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조치 명령	「도로법」 제40조제4항
		⑱ 지방도의 접도구역내에서의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명령	「도로법」 제96조
		⑲ 도로표지 정비(개량 또는 설치는 제외한다. 다만, 시군에서 위탁받아 시행하는 구간은 개량 또는 설치할 수 있다.)	「도로법」 제55조, 「경상남도 지방도유지·관리규정」
허가과	1.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 -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에 관한 권한(5,000㎡ 미만)	「농지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② 개별법령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 (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만 한정한다)	「농지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2. 농지전용허가 (협의)사후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권한 위임된 사항에 한정함)	①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농지법」 제39조, 제42조, 제55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② 관계공사의 중단 및 조업의 정지	「농지법」 제39조, 제42조, 제55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③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농지법」 제39조, 제42조, 제55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④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	「농지법」 제39조, 제42조, 제55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3.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농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농산업 지원과	1. 농산물원산지표시 위반 지도·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수거·조사·처분·공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② 명예감시원의 감독·운영 및 경비지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③ 포상금지급, 과태료 부과·징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산림과	1. 산지전용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산지전용지 복구설계 승인	「산지관리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 제안이유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경남도지사로부터 김해시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출장소, 읍·면·동에 재위임 가능한 사무를 전수 조사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소관부서 및 위임사무 재정비함(별표)

제532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9년 11월 1일

김해시 규칙 제666호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옥내누수가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것으로서 지하 또는 벽체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함 내 누수와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한다.
-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서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서 요금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가구분할)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른 가구분할을 적용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가구분할 신청 시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23의조2”를 “제23조의2”로 한다.

제3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를 각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인서

신청구분	신규() 해지() 변경()	전화번호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세대주성명	생년월일	
	주소		
수도 사용자	수용가성명	관리번호	
	소재지		

※ 신청일의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이사, 자격상실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반드시 변경 또는 해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세대로서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17호서식]

다자녀(세자녀 이상) 세대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구분	신규() 변경() 해지()							
수용가	관리번호							
	주소							
	성명	(남/여)			전화번호			
감면 대상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세대주							

첨부서류 : 세대별 주민등록표 1부.

[개인정보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다자녀(세자녀 이상) 세대 수도요금 (감면/감면해지) 신청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개인정보) : 개인정보(주소,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 보유 및 이용기간 : 다자녀(세자녀 이상) 세대 수도요금 (감면/감면해지) 신청 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구 상수도요금 (감면/감면해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 신청일의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이사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재신청하여야 함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 관계 :)

김해시장 귀하

다자녀(세자녀 이상) 세대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인서

위 신청인은 다자녀(세자녀 이상) 세대로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 제안이유

- 수도요금 체계 개선(가정용 요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가구분할 적용방법 등을 정비하고, 다자녀 세대 수도요금 감면 기준 등을 마련하며, 그 밖에 규칙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다자녀 세대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규정 신설(제23조제6항)
- 가정용 요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가구분할 적용방법 등 정비(제27조)
- 규칙 운영상 미비점 보완(제23조제1항)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 주차장) 경미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 주차장) 경미한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 330-359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 11. 1.

김 해 시 장

1.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 주차장) 경미한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경미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1	주차장	동상동 923-1번지 일원	2,249	증) 93	2,342	'09.11.26	

- 경미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변경) 내 용	결 정(변 경) 사 유
101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위 치 : 동상동 912-20번지 일원 - 면 적 : 2,249㎡ → 2,342㎡, 증) 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상시장 일원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불편함 해소 및 부지를 정형화하고 부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

2.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 주차장) 경미한 결정(변경) 도면 : 생략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및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도로)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330-359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 11. 1.

김 해 시 장

1.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및 도로)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1	30	11.3	국지 도로	153	안하리 170-13	사회복지 시설경계	일반 도로	-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소로 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위치 : 한림면 안하리 165-7번지 일원 규모 연장 : 153m, 폭원 : 11.3m, 면적 : 1,8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시설 신설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6-1	사회복지시설	한림면 안하리 산6번지 일원	-	증) 10,090	10,090	-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6-1	사회 복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위치 : 한림면 안하리 산6번지 일원 규모 : A=10.0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가하는 노인가구에 대처하고 김해 시민의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고자 함

2. 김해 도시관리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도로) 결정 도면 : 생략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67호선외 1개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67호선외 1개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하고, 동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01일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326-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67호선외 1개호선)사업
 - 사업의 명칭 : 진영 북구 삼각지구 도시계획도로(소2-67호선외 1개호선) 개설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도시계획결정		금회 시행규모				비고
	길이(m)	폭원(m)	길이(m)	폭원(m)	당초 면적(m ²)	변경 면적(m ²)	
소로2-67호선	404	8~11	208	8~11	2,515	1,996	경상남도 제1992-150호
소로1-59호선	31	11	31	11	720	507	김해시 제2018-270호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해시장(도로과장)
 - 주 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23)
5. 사업기간 : 2019. 05. 03. ~ 2022. 05. 02.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불임
7. 실시계획(변경) 신청사유
 - 분할측량에 따른 편입면적 및 사업구간 변경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330-3595)비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기정	진영리	1581	도	4,613	50	김해시				
	변경	진영리	1581	도	4,613	-	김해시				
2	기정	진영리	331-6	제	203	73	학교법인 ○○○	부산 대청정 1정목 ○○			
	변경	진영리	331-8	제	14	14	학교법인 ○○○	부산 대청정 1정목 ○○			
3	기정	진영리	331-7	답	50	45	학교법인 ○○○	부산 대청정 1정목 ○○			
	변경	진영리	331-7	답	50	50	학교법인 ○○○	부산 대청정 1정목 ○○			
4	기정	진영리	331-2	답	711	424	김해시				
	변경	진영리	331-2	답	711	424	김해시				
5	기정	진영리	330-6	답	584	54	김해시				
	변경	진영리	330-6	답	584	54	김해시				
6	기정	진영리	330-2	답	321	174	학교법인 ○○○	부산 대청정 1정목 ○○			
	변경	진영리	330-7	답	178	178	학교법인 ○○○	부산 대청정 1정목 ○○			
7	기정	진영리	329-2	전	770	186	이○숙외 1인	창원시 성주동 153 유니온빌리지 ○○○	남창원○ ○○○ 합		권저당 지상권
	변경	진영리	329-3	전	189	189	이○숙외 1인	창원시 성주동 153 유니온빌리지 ○○○			
8	기정	진영리	327-2	전	2,727	63	박○자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	진영 ○○○○○ 합		권저당 지상권
	변경	진영리	327-14	전	64	64	박○자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			
9	기정	진영리	328	전	139	137	장○선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	경남단감 ○○○○○ ○○○합		권저당 지상권
	변경	진영리	328-1	전	135	135	장○선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			
10	기정	진영리	327-8	대	1	1	국(재무부)				
	변경	진영리	327-8	대	1	1	국(재무부)				
11	기정	진영리	327-5	대	16	2	국(재무부)				
	변경	진영리	327-15	대	2	2	국(재무부)				
12	기정	진영리	326-85	잡	268	141	장○선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	경남단감 ○○○○○ ○○○합		권저당 지상권
	변경	진영리	326-142	잡	143	143	장○선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			
13	기정	진영리	326-107	전	43	24	장○선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			
	변경	진영리	326-150	전	25	25	장○선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			
14	기정	진영리	326-81	전	1,233	61	송○복외1인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	진영 ○○○○○ ○합		권저당 지상권
	변경	진영리	326-141	전	60	60	송○복외1인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			
15	기정	진영리	326-86	대	43	37	박○자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			
	변경	진영리	326-143	대	36	36	박○자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			
16	기정	진영리	326-96	대	165	104	박○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79 흥실 아파트○○○○○○○	진영 ○○○○○ 합		권저당 지상권
	변경	진영리	326-149	대	108	108	박○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79 흥실 아파트○○○○○○○			
17	기정	진영리	326-92	대	238	226	장○선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			
	변경	진영리	326-146	대	202	202	장○선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			
18	기정	진영리	326-72	대	412	7	송○복외1인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진영 ○○○○○ 합		권저당
	변경	진영리	326-140	대	2	2	송○복외1인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9	기정	진영리	326-136	도	84	6	송○복외2인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진영 ○○○○○ 합		권저당
	변경	진영리	326-136	도	84	-	송○복외2인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0	기정	진영리	326-7	도	1,127	145	국 (국토교통부)					
	변경	진영리	326-7	도	1,127	-	국 (국토교통부)					
21	기정	진영리	326-60	대	134	5	송○복외1인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진영 ○○○○○ 합			권자당 지상권
	변경	진영리	326-60	대	134	-	송○복외1인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2	기정	진영리	326-113	도	798	65	김해시					
	변경	진영리	326-113	도	798	-	김해시					
23	기정	진영리	326-90	대	375	14	송○복외1인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변경	진영리	326-114	대	2	2	송○복외1인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4	기정	진영리	326-91	도	139	112	국 (국토교통부)					
	변경	진영리	326-91	도	139	-	국 (국토교통부)					
25	기정	진영리	683-20	도	1,476	2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진영리	683-20	도	1,476	-	국 (국토교통부)					
26	기정	진영리	701-1	철	29,992	227	국 (국토교통부)					
	변경	진영리	701-146	철	256	256	국 (국토교통부)					
	변경	진영리	701-147	철	1	1	국 (국토교통부)					
27	기정	진영리	702	도	565	16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진영리	702	도	565	-	국 (농림축산식품부)					
28	기정	진영리	365-1	묘	450	162	국 (국토교통부)					
	변경	진영리	365-13	묘	36	36	국 (국토교통부)					
29	기정	진영리	701-4	대	63	15	국 (국토교통부)					
	변경	진영리	701-149	대	16	16	국 (국토교통부)					
30	기정	진영리	365-4	도	1,319	118	국 (국토교통부)					
	변경	진영리	365-4	도	1,319	-	국 (국토교통부)					
31	기정	진영리	701-2	전	331	31	국 (국토교통부)					
	변경	진영리	701-148	전	32	32	국 (국토교통부)					
32	기정	진영리	683-2	전	119	24	국 (국토교통부)					
	변경	진영리	683-24	전	23	23	국 (국토교통부)					
33	기정	진영리	326-93	대	212	169	장○선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	경남단감 ○○○○ ○○○합			권자당 지상권
	변경	진영리	326-147	대	148	148	장○선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				
34	기정	진영리	326-95	전	63	61	장○선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	경남단감 ○○○○ ○○○합			권자당 지상권
	변경	진영리	326-148	전	51	51	장○선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				
35	기정	진영리	683-3	전	79	16	국 (국토교통부)					
	변경	진영리	683-25	전	17	17	국 (국토교통부)					
36	기정	진영리	683-4	도	53	43	국 (국토교통부)					
	변경	진영리	683-26	도	45	45	국 (국토교통부)					
37	기정	진영리	701-15	답	195	49	국 (국토교통부)					
	변경	진영리	701-150	답	42	42	국 (국토교통부)					
38	기정	진영리	683-5	답	182	128	국 (국토교통부)					
	변경	진영리	683-27	답	147	147	국 (국토교통부)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8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8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하고, 동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01일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595-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8호선)사업
 - 사업의 명칭 : 진영 한림풀에버APT 도시계획도로(중1-8호선) 개설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도시계획결정		금회 시행규모			비고
	길이(m)	폭원(m)	길이(m)	폭원(m)	면적(m ²)	
중로 1-8호선	270	20	163	20	3,292	김해시 고시 제1999-13호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해시장(도로과장)
 - 주 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23)
5. 사업기간
 - 당 초 : 2019. 06. 14. ~ 2019. 12. 13.
 - 변 경 : 2019. 06. 14. ~ 2022. 06. 13.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변경없음(생략)
7. 실시계획(변경) 신청사유
 -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330-3595)비치】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2-55, 중2-56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2-55, 중2-56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동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01일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587-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2-55, 중2-56호선)사업
 - 사업의 명칭 : 주촌선지리아파트진입도로(중2-55, 중2-56호선) 개설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시설의 종류	도시계획결정		금회시행규모			최초결정일
	길이(m)	폭원(m)	길이(m)	폭원(m)	면적(㎡)	
중로2-55호선	96	16.5	96	16.5	1,784.8	김해시 고시 제2016-333호 (2016.12.20.)
중로2-56호선	245	12~15	245	12~15	3,690.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한토지신탁(주) 대표 이훈복
 - 주 소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삼성동, 아셈타워)
5. 사업기간
 - 당 초 : 2017. 06. 27. ~ 2019. 09. 30.
 - 변 경 : 2017. 06. 27. ~ 2019. 11.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변경없음(생략)
7.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사유
 - 민원해결 후 공사진행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아파트 정문 4지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변경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330-3595)비치】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소2-239, 소1-72, 소2-252호선)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01일

김 해 시 장

1. 위 치 : 김해시 관동동 24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소2-239, 소1-72, 소2-252호선)사업
 - 명 칭 : 율하현대아파트 앞 기존도로 폭원 확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도시계획결정		금회 시행규모			비고
	길이(m)	폭(m)	길이(m)	폭(m)	면적(m ²)	
소로 2-239호선	258	8~12	128	2.9~3.8	441	김해시 고시 제2003-372호 (2003.12.30.)
소로 1-72호선	63	10	4.5	10	45	
소로 2-252호선	180	8~12	139	2.7~3.8	391	

※ 새로이 신설된 시설, 부지 등은 김해시 관리부서로 무상 귀속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율하현대지역주택조합 대표 변상돈
 - 주 소 : 김해시 관동로 162, 2층
5. 사업시행기간 : 2018. 06. 08. ~ 2020. 02. 08.
6. 준 공 일 : 2019. 08. 26.
7. 문 의 처 : 김해시 도시계획과(☎055-330-3595)

공고 제 2019-3814 호

[√] 통행의 금지·제한
[√]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 통행의 금지·제한
[√] 차량의 운행 제한 을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4일

김 해 시 장

직인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대로 1-3-3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보행자, 이륜차 및 차량 (전면 통제)	구간	경상남도 김해시 삼문동 산139-6, 산 155-6, 신문동 1152-2, 1204-5번지 일원
기간	2019 년 04 월 29 일부터 2020 년 02 월 29 일까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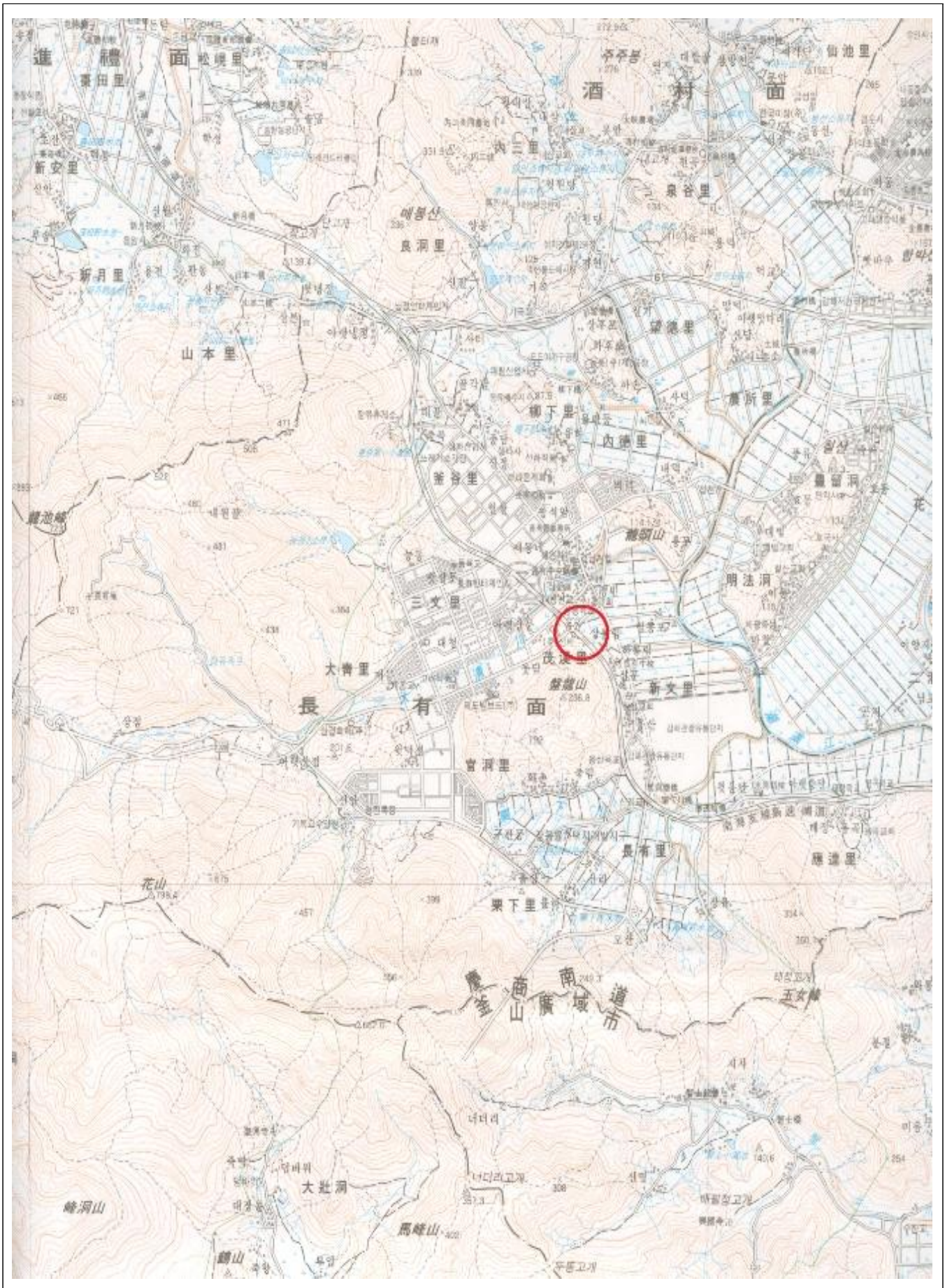
도시계획도로(대로 1-3-3호선)개설공사 암발파 기간연장, 접속도로 추가 공사

그 밖의 사항

우회도로 : 종로2-1호선 우회도로 이용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위치 도



○ 교통처리 계획도

